파주시 적성면 공고 제2026-37호

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
2026년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반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: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11. 05. ~ 2026. 11. 20.(15일간)
3. 공고대상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과오납금 환급액	공고사유
윤*진	2000.03.18.	파주시 적성면 청송로	20,000	이사불명
고*근	1972.03.06.	파주시 적성면 칠중2길	40,000	폐문부재
김*란	1981.02.23.	파주시 적성면 마지초교길	40,000	폐문부재
이*영	1954.11.15.	파주시 적성면 솥뒤로	40,000	폐문부재

4. 제출서류: 통장사본 1부
5. 기타사항: 환부 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 규정에 의거 환부금 청구권이 시효 소멸됨
6. 문 의 처: 적성면 행정복지센터(☎031-940-8190)

2026년 11월 05일

적 성 면 장